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성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95
----------	---------

발 의 연 월 일 : 2022. 9. 30.

발 의 자 : 김성한, 박성호, 한상욱,
전철규, 박학용, 최세진,
김현진, 김순옥, 신찬호,
이충현

1. 제안이유

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비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이에 수입이 없는 응시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면접비를 지원하여 면접 참석률 제고 등 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을 정함.(안 제2조)

나. 지급기준을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3조)

다. 중복금지규정을 정함.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.

나. 협조부서 : 의회사무국

다. 입법예고 : 2022. 10. 6. ~ 2022. 10. 12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면접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고 한다)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(이하 “응시자”라고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응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면접비는 매년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.

제4조(중복 지원 금지)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.

제5조(기타) 기타 세부 지원방법은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. 1. 1. 부터 시행한다.